

	<b>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규정</b>	규정번호	2-4-5
		제정일자	2024.4.15.
		개정일자	
		책임부서/팀·계	교무처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 학칙 제26조의3에 의거,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의 계속 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(이하 '전공심화과정'이라 한다)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설치과정 및 입학정원)** 전공심화과정의 설치과정 및 입학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3조(수업연한)** 전공심화과정 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하여 4년 이상이 되도록 한다.

**제4조(재학연한)** 전공심화과정의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**제5조(입학자격)**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동일계열 전문학사과정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.

**제6조(위원회)** ① 전공심화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(이하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) 및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편성위원회(이하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편성 운영위원회)를 각각 둔다.

② 각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.

**제7조(입학허가)** 전공심화과정의 입학허가는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**제8조(교육과정)**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하며 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 편성위원회에서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라 정한다.

**제9조(교과이수 단위)**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당 15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한다.

② 졸업에 필요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이수 학점은 1년제 24학점, 2년제 6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 학기별 최소 이수학점은 12학점이나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.

**제10조(졸업)** 학생이 졸업을 하기 위하여는 2년제 과정은 4학기 이상, 1년제 과정은 2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지도비)**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학과의 책임교수에게 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12조(학칙준용)** 이 규정 이외의 학사운영은 신안산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